



원종욱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산재 예방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인센티브

산재 예방에 필요한 것은 산재보험뿐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산재 예방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는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한 EU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자.¹⁾

보고서는 산재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활동을 꼽고 있다. 감독과 처벌을 통해 기업이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외에 경제적 인센티브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유지·증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중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다.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에 투자하는 만큼 정부에서 매칭펀드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는 기업과 정부의 행정비용을 높인다는 단점이 있다.

보고서는 산재보험 요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도 이야기하고 있다.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은 위험군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산재 경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산재보험과 관련한 또 다른 인센티브로는 특정 산재 예방 모델을 도입하는 기업에 보험료를 감액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산재보험 경험료율을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는 산재보험 청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산재 은폐의 문제가 있다. 특히 사업장 내부에 관리자나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 조합이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여 벌금을 부

1)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Economic Incentives to impro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a review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 (2010)

과할 수 있어서 보험 조합은 포지티브 인센티브와 네가티브 인센티브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벌금 등 네가티브 인센티브는 기업의 잘못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들어낼 수 있다. 보고서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7가지 성공 요인을 제언하며, 경험료율에 따른 인센티브보다는 미래의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경제적 인센티브의 7가지 성공 요인

1. 인센티브는 과거의 결과뿐 아니라 미래의 산재와 직업병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보상해야 한다.
2. 인센티브는 모든 기업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더욱 필요하다.
3. 인센티브는 사업주가 참여할 동기를 유발할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4. 기업에 요구되는 예방 활동과 보상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5. 참여 장벽을 낮춰 기업과 인센티브 제공 기관(보험회사나 공공기관)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
6. 많은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분명한 기준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7. 특별한 분야(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산재 예방 기법을 도입하는 데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인센티브

산재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인센티브로는 산재보험료를 감액하는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 제도가 있다. 그 밖에 산재 예방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클린사업 조성, 산재예방시설 용자,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주로 산재보험료로 조성되지만, 보험료 외에도 기금 운용수익금, 적립금, 잉여금,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이 기금은 주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지만 산재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된다.²⁾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율은 등급요율과 개별요율로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류와 산재 발생 위험의 등급에 따라 각 그룹의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데, 이것을 사업 종류별 요율이라 한다. 2021년은 사업 종류를 28개로 구분하였으며, 최고요율은 18.5%(석탄광업 및 채석업)였고, 최저요율은 0.6%(금융 및 보험업 등)이었으며,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3%(14.3%)이었다. 출퇴근재해요율은 0.10%(1.0%)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이었다.³⁾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 17865호, 2021. 7. 1. 시행].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설치 및 조성), 제96조(기금의 용도)

3) 고용노동부, '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보도자료. (2020. 12. 29)

산재보험에서 개별요율은 개별실적요율로 불리며, 경험료율을 적용한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산재 발생(보험 수지)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시킴으로써 기업이 산재 예방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개별실적요율은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법에 명시돼 있지만, 산재보험 관계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행된 것은 1969년이었다.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보험 수지율에 따라 $\pm 30\%$ 범위에서 인상·인하하다가 1977년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986년도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적용 비율을 $\pm 40\%$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했다. 이후 2018년까지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2019년에 적용 사업장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하였고, 적용 비율도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pm 20\%$ 로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을 축소한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 발생률이 높고, 규모가 작아서 재해 발생 시 수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대규모 사업장은 산재 발생률이 낮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율은 할증될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의 보험료율은 인하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더욱이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이유는 산재 예방에 대한 기술도 부족하고,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발생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산재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고, 보험료율만 높이는 결과가 된다.

결과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은 높아지고, 재해율이 낮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해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산재를 은폐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시장에서 도태되어 폐업할 수도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개별실적요율제도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할인의 기회가 없다. 그렇지만 이들 소기업에 적용하였을 때의 문제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존재한다. 결국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앞서 유럽의 경험에서 본 것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규모별 현황 (2020)

사업장 규모		개별요율 적용 사업장수	인상		인하	
			사업장수	%	사업장수	%
전 체(계)		58,461	4,104	7.0	53,634	91.7
제조업	30~150인 미만	46,049	3,061	6.6	42,503	92.3
	150~1,000인 미만	7,337	206	2.8	7,066	96.3
	1,000인 이상	652	3	0.5	649	99.5
건설업	60~300억 미만	3,743	785	21.0	2,813	75.2
	300~2,000억 미만	555	47	8.5	481	86.7
	2,000억 이상	125	2	1.6	122	97.6

출처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예방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실적요율보다는 기술이나 설비 지원과 같은 특별한 종류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산재예방요율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인센티브로는 산재예방요율제도를 꼽을 수 있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예방 활동을 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로 201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⁴⁾ 산재예방요율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재 발생 위험이 높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재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재 산재 예방 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첫째,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10% 인하), 둘째,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 이수 후 산재예방계획 수립(10% 인하), 셋째,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10% 인하)하는 것이 있다. 사업주 교육과 위험성평가는 중복하여 인하실 수 없고,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중복하여 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0%까지 인하실 수 있다. 2019년 산재 예방요율 적용을 통하여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은 45,121개소이다.⁵⁾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주의 의지와 현실 인식이다. 사업주가 산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산재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 예방 교육을 받고,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이 산재 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 단축도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047호, 2014. 1. 1.시행]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5) 고용노동부. 2019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95 쪽. 열림기획㈜ (2020. 8. 31.)